

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

판 결

사 건 2025고단962 재물손괴
피 고 인 최희규 (5*****-*****)
주거 가평군 ○○○ ○○○○ ○○○-○○○, ○○○호
등록기준지 서울 ○○○ ○○○ ○○○-○○○
검 사 박○우(기소), 나○정(공판)
변 호 인 변호사 정○원(국선)
판 결 선 고 2026. 3. 5.

주 문

피고인은 무죄.

이 유

1. 이 사건 공소사실

피고인은 ‘성우아파트 나동’ 407호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, 피해자 이○○은 ‘성우아파트 나동’ 307호의 소유주이다.

피고인은 2019. 9. 4.경부터 2023. 11. 9.경까지 약 4년 2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경기 부천시 ○○○ ○○○ ○○○번길 ○○, ‘성우아파트 나동’ 407호의 누수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307호 안방, 화장실 등이 벽지가 훼손되고 있으니 조치를 해달라는

요청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이를 내버려 두어 피해자에게 도배 공사 등 비용이 1,936,000원 상당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.

2. 판단

가. 관련 법리

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,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,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,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범이건 불문범이건 상관없이 없고 또 공범이건 사범이건 불문하므로, 법령, 법률행위,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(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)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성우아파트 나동 407호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아들인 구○○이고, 피고인은 구○○을 위해서 성우아파트 나동 407호의 관리 업무를 담당할 사실이 있을 뿐인 점, ② 피해자는 2024. 2. 19. 수사기관에 구○○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(증거기록 제2권 제2쪽), 그 후 2024. 6. 2. 피고소인을 구○○에서 피고

인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고소장 정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(증거기록 제2권 제 73쪽)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한 점, ③ 변경되기 전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지위가 성우 아파트 나동 407호의 소유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던 점, ④ 이 사건과 같이 누수로 인한 재물손괴가 문제되는 경우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는 민법 제758조 등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, ⑤ 피해자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는 민법 제758조 등을 근거로 성우아파트 나동 407호의 소유자인 구○○만 피고로 하여 제기하였고, 제1심과 항소심을 거쳐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가 받아들여진 점, ⑥ 피고인이 누수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신의성실의 원칙, 사회상규, 조리상 작위의무를 인정하기도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 재물의 손괴라는 결과를 방지할 작위의무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,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,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.

판사 권○범 _____